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8년 8월 28일
- 회부일자 : 2018년 8월 30일

3. 제안이유

-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'18년 하반기 경제중심 조직개편에 대한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<분장사무 조정>

- 이 관 (안 제6조)
 - 지방세, 세입관리, 세무지도,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
: 행정국 → 기획관리실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'18년 하반기 경제중심 조직개편에 대한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

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행정국 소속이었던 세정과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려는 것임.
- 세정과의 업무가 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국은 기존 6과에서 5과로, 기획관리실은 기존 혁신담당관과 법무통계담당관을 통합하고 세정과 업무를 이관 받아 5과 체제를 유지하게 됨.
- 도정목표 및 공약실현, 현안사업 등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정비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